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40753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정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구본주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운영 및 금융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LCD 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G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후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상호가 변경되어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 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8. 6.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대상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은 원고를, “매도인”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제2조 [계약의 대상 목적물]
--

“대상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100원) 총 96,984,521주 중 “매도인”이 보유한 주식 9,878,184주(“대상회사” 지분의 10.19%)(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와 이에 수반되는 “대상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이하 “경영권”이라 한다)를 본 계약

의 목적물(이하 “매매대상”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매매대상”의 매매대금은 “대상주식”과 “경영권” 양도의 프리미엄을 포함 합계 일금 일백오십억원(₩15,000,000,000)(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매매대금의 지급]

1. 본 계약 체결일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일금 일십오억만원(₩1,500,000,000)(이하 “계약금”이라 한다)을 “매도인”이 지정한 “매도인” 명의로 개설된 국내 시중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의 현금 등가물로 지급한다.

2. 2018년 7월 20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에 대한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20%인 일금 삼십억원(₩3,000,000,000)(이하 “중도금”이라 한다)을 “매도인”이 지정한 “매도인” 명의로 개설된 국내 시중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의 현금 등가물로 지급한다. 단, 위 “중도금” 지급일은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일자 이전에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요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다.

3.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이하 “본건 주주총회”라 한다) 개최일 2일전(이하 “잔금 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계약에 대한 잔금으로 일금 일백오억만원(₩10,500,000,000)(이하 “잔금”이라 한다)을 “매도인”이 지정한 “매도인” 명의로 개설된 국내 시중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의 현금 등가물로 지급한다.

4.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 하에 지정한 법무법인(이하 “에스크로법인”이라 한다)에 “본건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대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포함) 중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의 하에 지정한 등기임원(이하 “사임 등기임원”이라 한다)의 사임서(개인인감 날인 및 발급 기일 1주일 이내의 개인 인감증명서 첨부

(이하 “사임서”라 한다)를 에스크로 한다.

5.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 완료와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상주식”의 100%인 9,878,184주 및 “사임서”를 지급 및 교부한다.

6. 본조 3항의 “잔금 지급일”은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일자 이전에도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요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며 동시에 “매도인”은 “대상주식” 100% 및 “사임서”의 지급 및 교부를 완료하기로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1.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에 명시된 각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어느 한쪽이 불이행할 경우 귀책 당사자는 위약별로 일금 삼십억원(₩3,000,000,000)(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을 위약별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에 따라 “매도인”이 귀책 당사자인 경우, 즉시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별도로 “위약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3. 본조 1항에 따라 “매수인”이 귀책 당사자인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몰취하여 “매도인”에게 귀속시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4조 [계약 해제]

1.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일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회사”의 기업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자산의 부실이나 영업상의 중대한 하자의 존재

③ “사임 등기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임을 거부하는 경우

④ 계약일 현재 “대상회사”의 상장폐지사유의 존재

⑥ 기타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6. 28. 계약금 15억 원을, 2018. 7. 20. 중도금 3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① 2018. 8. 6. ② 2018. 9. 14. ③ 2018. 10. 4. ④ 2018. 11. 27. ⑤ 2018.

12. 10. ⑥ 2019. 1. 16. ⑦ 2019. 2. 1. ⑧ 2019. 4. 12. ⑨ 2020 3. 31. ⑩ 2020. 5. 29. ⑪ 2021. 5. 28. ⑫ 2021. 11. 26. 총 1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는 내용의 각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대상회사는 2019. 3. 21.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2020. 3. 11.부터 관리종목지정사유에서 해소되었다. 대상회사는 2019. 5. 2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 10점을 받고, 이후 추가 벌점 및 횡령·배임으로 인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거래정지가 된 적이 있다.

바. 한편, G시장본부는 2021. 7. 26. 대상회사에 대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대상회사의 주권에 대하여 심의 속개 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는 2021. 11. 26. “차후 대상회사의 거래정지가 해소되는 그 다음 날 영업일까지 원 계약을 연장하는데 합의한다. 다만, 거래정지가 해소되는 시점은 양 당사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변경합의서는 본 변경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 연장하되, 거래정지 해소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해소되는 그 다음 영업일 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최종 변경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즉, 이 사건 최종 변경합의로 예정한 잔금 지급일은 그 합의 체결일로부터 1년 후인 2022. 11. 26.이다.

사. 피고는 2022. 10. 20. 원고에게 더 이상 잔금 지급일을 연기할 수 없음을 통보하며 잔금 지급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2. 10. 25.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 피고는 2022. 10. 28. H기관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계약해지통보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2. 11. 1. 원고에게 원고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대상회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 10점을 받은 이후 추가 벌점을 받고 횡령·배임 문제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대응하면서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경영권을 이전시킴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아닌 단순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변질되었고, 현재도 언제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으로 될지 모른다(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1항 1, 4, 6호 위반). 또한 피고는 대상회사의 사임 등기임원의 사임서를 에스스로하지 않았다(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1항 3, 6호 위반).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는 내용의 변경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현혹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따라 계약금 15억 원, 중도금 30억 원, 위약벌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원인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해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46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1항 1, 3, 4, 6호로 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위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은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2일 전”이었으나, 이후 ① 2018. 8. 6. 자 변경합의로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일”로, ② 2018. 9. 14. 자 변경합의로 “2018. 10. 31.”로, ③ 2018. 10. 4. 자 변경합의로 “2018. 11.

27.”로, ④ 2018. 11. 27. 자 변경합의로 “2018. 12. 10.”로, ⑤ 2018. 12. 10. 자 변경합의로 “2019. 1. 31.”로, ⑥ 2019. 1. 16. 자 변경합의로 “2019. 2. 15.”로, ⑦ 2019. 2. 1. 자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7차 변경합의’라 한다)로 “2019. 4. 12.”로, ⑧ 2019. 4. 12. 자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8차 변경합의’라 한다)로 “대상회사의 G시장 관리종목 지정사유에서 해제가 확정되는 경우 또는 2020. 3. 31.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로, ⑨ 2020. 3. 31. 자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9차 변경합의’라 한다)로 “벌점 해소가 되는 그해 월말인 2020. 5. 31.”로, ⑩ 2020. 5. 29. 자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10차 변경합의’라 한다)로 “대상회사의 실질심사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변경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뒤”로, ⑪ 2021. 5. 28. 자 변경합의(이하 ‘이 사건 11차 변경합의’라 한다)로 “대상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뒤”로, ⑫ 이 사건 최종 변경합의로 “대상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뒤”로 각 연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와 피고는 쌍방의 합의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였다.

2) 2019. 2. 1. 자 이 사건 7차 변경합의까지는, 그 이후 체결된 변경합의에는 구체적 사유가 상세히 기재된 것과는 달리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10차 변경합의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2018. 6. 28.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은 원활한 자금 준비를 위하여,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9. 2. 1. 자 이 사건 7차 변경합의까지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원고의 요청으로 잔금 지급일이 연기되었다고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 6.경 대상회사의 결손이 누적되어 2018년 하반기 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계약을 완결하여야 했으나 원고가 잔금 지급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만약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공시번복으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부득이 조속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변경합의를 하였다. 이후 잔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대상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에 기재된 대상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던 사실, 대상회사는 2019. 3. 21.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벌점 등을 받으며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상회사의 관리종목지정, 벌점 등 경영상 문제는 잔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적기에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한다.

4) 이 사건 8차 변경합의부터 이 사건 10차 변경합의까지는 대상회사의 관리종목지정, 벌점을 받은 사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상장폐지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한 사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제3자의 유상증자로 새로운 경영참가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해 및 동의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계약해제 사유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경영권 이전’ 사유는 원고가 이미 이해하고 동의한 내용이고, ‘대상회사의 관리종목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매매거래정지’ 사유 등은 이미 피고와 변경합의를 통해 그 사유가 해소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리종목지정이 해소되는 등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대상회사가 언제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으로 될지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현혹시켜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6)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대상회사 사임 등기임원의 사임서를 에스크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위 약정과 달리 사임서를 에스크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사임서를 지급 및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사임서 에스크로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12차례에 걸쳐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에스크로에 관하여는 쌍방이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쌍방의 양해 하에 사임서 에스크로를 보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사임 등기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임을 거부할 경우’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사임서를 에스크로하지 않았을 뿐 대상회사의 사임 등기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임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권가희, 판사 오하나